

초소형자동차 제동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3조제1항제3호 관련)

1. 설치기준

가. 설치위치

1) 너비 방향

가) 1개가 설치된 경우 제동등의 기준점은 초소형자동차의 중앙 수직 종단면 내에 위치할 것

나) 2개가 설치된 경우 제동등의 기준점은 초소형자동차의 중앙 수직 종단면에 대칭일 것

다) 후차축에 좌·우 양쪽에 바퀴를 가지고 있고 너비가 1,300밀리미터 초과인 경우 제동등의 발광면 간 최소 거리는 600밀리미터 이상일 것

라) 후차축에 좌·우 양쪽에 바퀴를 가지고 있고 너비가 1,300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제동등의 발광면 간 최소 거리는 400밀리미터 이상일 것

2) 높이 방향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1,500밀리미터 이하일 것

나. 관측각도

1) 제동등의 발광면은 상측 15도, 하측 1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다만, 등화의 기준축이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미만에 설치된 경우에는 발광면은 상측 15도, 하측 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되어야 한다.

2) 1개가 설치된 경우 제동등의 발광면은 좌측 및 우측은 4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3) 2개가 설치된 경우 외측 45도, 내측 1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다. 조사 방향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 후방일 것

라. 작동조건

제동등은 제15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작동될 것

2. 광도는 별표 5의21 제2호 또는 별표 6의15 제2호에 따른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